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2소위20-산02호

민원표시 2BA-2504-0913309 상수도관 이설 요청

신 청 인 A

피신청인 경상남도 B군수

의 결 일 2025. 7. 7.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경남 B군 C면 D리 400-1 공장용지 995㎡ 토지 하부에 설치된 상수도관을 이설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남 B군 C면 D리 400-1 공장용지 995㎡(이하 ‘이 민원 토지’ 라 한다)와 이 민원 토지에 있는 목조 함석지붕 단층공장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 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이 민원 건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2006년 무렵 경남 B군 C면 D리 소재 E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 이라 한다)에 대한 수도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민원 토지 아래에 상수도관(이하 ‘이 민원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고 누수에 따른 누전이나 전력 차단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피신청인

에게 수차례 이 민원 시설을 이설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시설은 이 민원 마을 전체 가구의 동의 하에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받아 100년 이상 이용된 비법정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아래에 설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동의 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은 것이며, 당시 이 민원 건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이 민원 마을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아버지의 주택 또한 이 민원 시설을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게 되었기에 이 민원 시설 설치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6. 6. 12. 이 민원 도로에 총 사업비 금56,700,000원으로 급수관과 배수관을 각각 설치하는 이 민원 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고, 세부적인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1996. 3. 15.부터 소유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또한,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상 아버지가 소유하였던 이 민원 건물을 2008. 10. 2. 소유권 보존등기 후 지금까지 소유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다. 이 민원 시설은 이 민원 토지 사이를 가로질러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생략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군도인 ○○

로에서 이 민원 마을 각 가구로 통하는 이 민원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비법정도로인 이 민원 도로가 이 민원 마을 진입도로로 100년 이상 사용되었다고 한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설치 공사 시 이 민원 건물을 운영 및 관리하던 신청인의 아버지로부터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버지는 2000. 6. 21.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설치 공사 시 이 민원 마을 주민 총 50명으로부터 공사비 분담금을 각 230,000원씩 납부받았는데, 분담금 납부자 명단에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시행 전 이 민원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문서, 공고, 구두 등 방법을 통해 알리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구 「수도법」(2005. 12. 29. 법률 제7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장치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생략)

2) 「수도법」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3)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 4. (생략)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민원 시설을 이설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던 이 민원 도로의 일부인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구 「수도법」(2005. 12. 29. 법률 제7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3조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수도법」 제60조의2 또한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시설이 이 민원 토지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민원 시설의 존재 여부는 이 민원 토지의 가치나 이용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이 민원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비법정도로인 이 민원 도로의 일부로서 장기간 마을 진입도로로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수용하여 취득하지 않은 이상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민원 토지의 하부에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수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④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설치 당시 이 민원 건물을 운영 및 관리하며 이 민원 마을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아버지의 주택 또한 이 민원 시설을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시설 설치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아버지는 이 민원 시설 설치 공사를 하기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이 민원 시설을 이설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